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빠른 회복을 위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제9조의 경우,
기존 3항의 입장료 감액 대상에
임산부 본인에 대한 면제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의 경우, 사용료의 감면으로서
1호의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감면에
임산부 본인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2호의 경우,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임산부 본인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예우 및 지원 내용의 하나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빠른 회복을 위한 혜택 확대를 통해
출산율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취지는 물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